

# 전기공사 안전관리 매뉴얼

제1장 착공전 안전관리

제2장 공사중 안전관리

제3장 부록



# 재해예방기술지도 안내

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거  
**공사금액 1억원 이상** 120억원 미만인면서 **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**  
**전기·정보통신공사**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**월 2회**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.

## 01 대상공사

-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의 전기·통신공사
-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

## 02 대상외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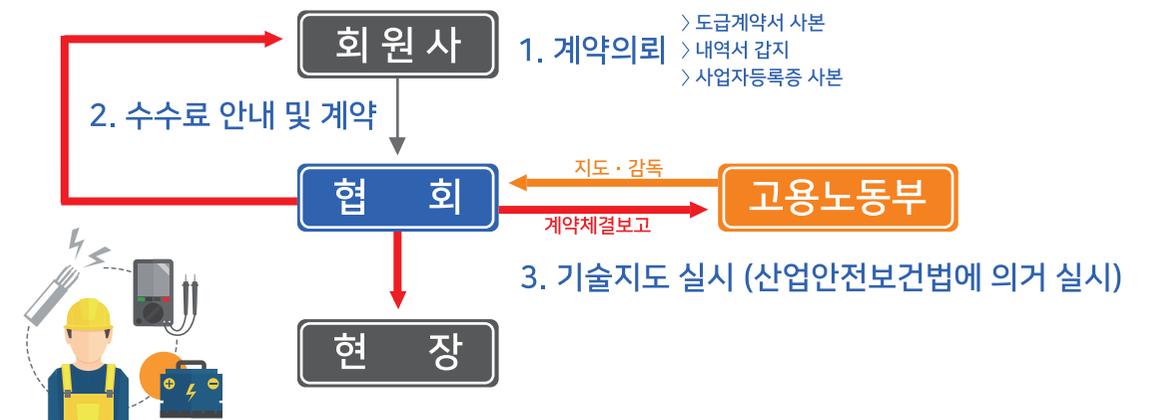
-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
-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(제주특별자치도 제외)
-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
-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

## 03 벌칙사항

- 300만원이하 과태료, 안전관리비 20% 미지급 또는 환수
-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시 : 1천만원이하 과태료

## 04 계약체결 절차

공사착공 전일까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류 비치  
(중앙회 및 전국 시·도회에서 기술지도 계약업무)



### [ 계약문의 ]

#### 중앙회 (서울)

TEL : (02) 3219 - 0695~6  
FAX : (02) 3219 - 0549, 0560

#### 제1사업소 (대구)

TEL : (053) 353 - 9078~9  
FAX : (053) 354 - 5891

#### 제2사업소 (광주)

TEL : (062) 352 - 1040~1  
FAX : (062) 352 - 1042

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시·도회로 문의 가능  
[견적·계약체결]